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11. 20.

다. 상정일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12.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김종임】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여 공유재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규정 변경(안 제1조)

나. 공유재산관리기금 존속 기한 연장(안 제3조)

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 신설(안 제4조)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조, 제6조)

마. 관련 법령 및 타 조례 단순 재기재 등 중복조항 삭제(안 제12~14조,
제16조, 제17조)

바.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 정비(안 제2조,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조항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로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였음.
- 조례 인용 법률의 현행화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구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법률적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임.
- 그리고,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에 따라 만료

-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가 도래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2023.12.31.)을 5년간 연장(2028.12.31.)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존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설치목적의 달성, 사업의 지속성,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여 재산 관련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2023. 4. 6. 개최한 ‘2023년 마포구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심의 이후인 2023. 8. 17.부터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적절한 절차를 거친 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규정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기금의 운용 대상 및 방법)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음.
- 기타 관련 법령 및 타 조례 단순 재기재 등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정비하였음.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변경·신설하는 등 법적 통일성 및 완성도를 높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

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